

2022년 중 주요 금융관계법령 정비내용

I. 머리말

II.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규제 완화 및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

1.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규제 완화
2.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

III. 금융규제 합리화를 통한 금융서비스 경쟁력 강화

IV. 금융소비자 보호

V. 기타 정비사항

VI. 맺음말

2022년 중 금융관계법령 개정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규제 완화, 금융규제 합리화를 통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금융시장 불안 및 유동성 경색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유동성 규제 완화,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조치 등이 시행되었으며 비은행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강화되었다. 한편 금융의 디지털 전환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공모펀드 등 금융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도 이루어졌다. 아울러 물적분할시 기존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 인정, 상호금융업권에서의 금리인하요구권 도입 등 금융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한 다수의 입법조치도 있었다.

I. 머리말

2022년 중에는 주요국 통화긴축 강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신용경계감이 높아지는 등 시장불안요소가 증가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정책당국은 금융기관의 유동성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시중 자금흐름이 원활해지도록 노력하였으며,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도 완화하여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도모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취약 중소기업의 조기 정상화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령도 정비되었다.

또한 대내외 금융환경 악화에 대비하여 비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는 등 금융기관 건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도 추진되었다. 아울러 국제보험회계기준인 IFRS17 시행에 따라 보험부채 시가평가 제도를 반영하는 등 보험회계제도 정비를 위한 보험업 관련 규정이 다수 개정되었다.

한편, 공모펀드 자산운용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모펀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는 등 금융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이루어졌다. 디지털 기술발달에 따른 금융기관의 디지털 플랫폼 전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절차를 개선하고 연구·개발분야의 망분리 규제 완화, 보험계약 비대면 해지절차 완화 등 규제를 합리화하였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입법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물적분할에 따른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주식매수청구권을 도입하고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장기 공매도·대차거래에 보고의

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금리상승기 중·저신용자 보호를 위해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을 조정하여 취약차주의 중금리 대출 접근성을 제고하였으며, 금리인하요구권을 상호금융업권 차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이하에서는 2022년 중 이루어진 주요 금융관계법령의 개정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II.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규제 완화 및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

1.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규제 완화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 강화,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증대된 가운데 우발적 신용사건으로 국내 회사채시장 및 단기자금시장 유동성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다수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가 실시되었다.

먼저 회사채시장 위축으로 기업대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상승압력을 완화하고 추가적인 대출 여력 확충을 위해 2022년 10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은행 및 저축은행의 예대율을 각각 105%, 110%로 완화하였다(2022.10.20.).¹⁾ 아울러 예대율 산출시 한국은행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등을 포함한 12종의 정책자금대출 취급액을 원화대출금 항목에서 제외하여 정책자금 대출 실행에 따른 예대율 상승 부담을 해소하였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여유자금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은행업

1) 예대율 완화,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등 확대, 유동성커버리지 규제비용 완화조치는 금융감독원의 비조치의건서로 이루어졌다. 비조치의건서 제도란 금융회사 등이 특정행위(신규영업 등)를 시행하기 이전에 그 행위가 금융감독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에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금융감독당국이 이를 심사하여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해 줌으로써 금융회사 등의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발생가능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감독규정」 시행 2022.12.21.).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 규제비율(LCR)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2022년 6월 이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자 하였으나, 단기자금시장 경색 우려가 커짐에 따라 2022년 10월 92.5%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이후 2023년 6월말까지 6개월간 동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하였다(2022.10.20.). 또한 금융지주그룹 내 유동성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10%에서 20%로, 다른 자회사들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의 한도를 20%에서 30%로 2023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였다(2022.12.21.).

한편 가파른 대출금리상승과 맞물려 부동산경기의 급격한 하락이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과거 부동산 가격 상승기 도입되었던 일련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가 완화되었다. 규제지역 내 LTV를 50%로 상향조정하여 단일화²⁾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1주택자 대상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구입목적 담보대출(LTV 50%)을 허용하였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대출한도를 확대(4억원→6억원)하고 LTV 우대 혜택을 늘려 최대 70%까지 인정하였다(「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보험업·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시행 2022.11.23.). 또한 주택경기 부진으로 종전 전세가 대비 신규 전세가 하락에 따른 전세금 미반환 리스크가 높아짐에 따라 금리와 보증금이 낮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 한도를 동일인 기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세입자의 전세자금 보호를 강화하였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2.1.18.).

경기둔화, 자금사정 악화 등에 따른 취약 중소기업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조치도 마련되었다. 먼저 부실징후기업의 조기 정상화 지원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자금 지원(DIP금융³⁾) 및 지급보증 대상에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진행 또는 졸업한 기업뿐 아니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과 워크아웃을 진행 또는 졸업한 기업도 포함하였다.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인수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도 추가하였다(「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 2022.2.18.). 한편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되었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지원금 용도로 발행하는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최고한도를 2022년 12월 1일까지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22.6.15.).

2.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

2022년에는 비은행권의 건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법령 개정이 추진되었다.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

2)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만 해당되며, 다주택자는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 0%로 유지하였다.

3) DIP 금융(Debtor In Possession Financing)은 법원의 회생절차 진행중인 기업에게 운영자금 및 긴급 필요자금을 공급하여 기업의 영업능력(채무상환능력) 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금융위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부대업무 승인으로 지원해오고 있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그 범위 등을 구체화하였다.

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추가 개정으로 기속법상 부실징후기업, 워크아웃기업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다.(시행 2022.12.21)

전문금융회사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⁵⁾ 및 여신 전문금융회사의 지급보증⁶⁾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여 건전성 강화를 도모하고 업권간 규제 차이를 개선하고자 하였다(「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시행 2022.7.1.). 또한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강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크고 유동성 관리가 어려운 법인형 MMF의 평가방식을 기존 장부가 평가에서 시가평가로 전환하고, 국채 등 안정적 자산의 비중이 30%를 초과⁷⁾하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장부가 평가를 허용하였다. 다만 법인형 MMF가 단기자금시장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의무적 시가평가 전환은 2023년 3월까지 1년간 유예하였다(「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 2022.4.1.).⁸⁾

2023년부터 새로운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의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부채 평가기준이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바뀌고, 수익 인식기준이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에 맞추어 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보험회사의 회계제도, 보험업법령상 용어 및 회계분류의 변경이 이루어졌다. 우선 책임준비금⁹⁾의 평가방식을 시가평가방식으로 변경하였고, 시가평가한 책임준비금이 해약환급금에 미달할 경우 그 부족액을 이익잉

여금 내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였다.¹⁰⁾ 그리고 재보험의 경우에는 원보험사 및 재보험사가 각각 책임준비금을 평가하여 재보험사의 손실이 예측되는 경우 미래예상손실을 반영하여 손실처리하도록 변경하였다.

또한 보험사 자본규제 기준으로 이용된 지급여력비율(RBC) 제도를 대체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도입근거를 마련하였다(「보험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 2023.1.1.).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라 가용자본의 손실흡수성 원칙을 제시하고 정교한 리스크 산출이 가능한 충격시나리오법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등 건전성 기준을 정비하였다. 나아가 보험사고 등에 대비한 적립금 제도도 지급리스크를 낮출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보험업감독규정」 및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시행 2023.1.1.).

대부업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규정 정비도 이루어졌다. 시·도지사가 대부업자 또는 그 임직원에게 주의·경고·문책 요구, 임원의 해임 권고·직무정지, 직원의 면직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기관과 시·도지사에 등록된 기관의 제재내용이 다른 점을 해소하였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2.7.5.).

5) 기존에는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 카드대출 미사용약정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였으나, 신용카드사의 비회원 신용대출, 사업자 운영자금 대출 등의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 잔액에 대하여도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를 부과하였다.
 6) 저축은행의 경우 지급보증에 대해 이미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상호금융회사의 경우 지급보증 자체가 제한되어 있어 추가로 대손충당금에 대한 규제가 불필요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만 부동산PF 이외의 지급보증(예: 자회사 관련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였다.
 7) 다만 시가평가 전환시 단기자금시장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정적 자산 비중이 30%를 하회하더라도 3영업일 이내에 30% 이상으로 회복하는 경우 장부가 평가를 허용하는 등 완충기간을 부여하였고 우체국·증권금융회사 예치금, 증권금융회사 및 특수법인 발행 단기사채 및 기업어음증권 등도 안정적 자산의 범위에 새로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8) 기존 MMF가 장부가 평가를 유지하려면 CP 매도, 국공채 매입 등 포트폴리오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9)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계약상 책임(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을 이행하기 위해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의 일부를 적립하는 금액으로 재무제표상 부채로 계리된다.
 10) 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 해약시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원가평가방식으로 산정된다. 보험부채인 책임준비금이 시가평가되는 경우 금리상승시 할인율 상승으로 부채가 과소평가 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자본이 증가하여 배당가능이익이 늘어나게 된다. 이 경우 증가한 배당가능이익이 배당으로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경우 보험청산 또는 대량 해약시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법정준비금 적립 기준을 마련하였다.

III. 금융규제 합리화를 통한 금융서비스 경쟁력 강화

공모펀드의 투자수단으로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이 이루어졌다. 우선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모펀드 설정시 운용사 고유재산 투자를 의무화하고, 펀드 운용성과에 연동된 보수 유형을 신설하여 공모펀드 운용·판매의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성과가 부진한 소규모 펀드 정리를 촉진하고 공모펀드의 투자전략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여 공모펀드의 설정·운용을 효율화하는 한편, 환매금지형 펀드에 신규투자자 유입을 허용하여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새로운 유형의 공모펀드의 도입을 촉진하여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간 MMF는 원화자산 투자만 가능하였으나 외화MMF를 도입하여 OECD 국가 등의 통화표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외화가 풍부한 수출기업 등의 여유 외화자금 운용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더해 존속기간이 있는 채권형 ETF를 도입하고 주식·채권 혼합형ETF의 지수구성 자율성을 확대하여 공모펀드의 자산관리수단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투자업 규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 2022.8.30.)

한편 퇴직연금의 투자수익률 제고를 통해 국민 노후대비 역할을 강화하고자 확정기여형퇴직연금(DB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사전지정운용제도, 일명 '디폴트옵션'을 도입하였다. 퇴직연금사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장기투자에 적합한 퇴직연금 운용상품을 마련하여 기업에 제시하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는 상호 합의로 디폴트옵션을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하고 퇴직연금가입자인 근로자는 디폴트옵션의 주요 정보를 제공받아 그 중 자신의 투자성향 등에 맞는 상품을 지정할 수 있게 하였다.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한 이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에도 6주 경과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되는데 근로자는 희망할 경우 운용방식을 언제든지 변경(opt-out)할 수 있도록 하였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시행 2022.7.12.).¹¹⁾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부응하여 금융서비스의 편의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조치도 있었다. 보험분야에서는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보험계약자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거동이

외화 MMF의 구조



자료: 금융위원회

11) 디폴트옵션 도입에 따라 근로자(가입자)는 과거보다 용이하게 퇴직연금 적립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고 퇴직연금의 운용성과 평가가 활발해지면서 퇴직연금사업자(증권, 은행, 보험) 및 상품제공자(자산운용사, 보험 등)의 수익률 경쟁도 가속화되어 퇴직연금의 장기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려운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비대면 보험서비스가 용이해지도록 제도를 정비하였다. 보험계약자가 본인인증 방식 등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을 통해 계약해지를 청구하는 경우 사전동의¹²⁾ 여부와 무관하게 통신수단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2.2.18.). 또한 보험상품 전화 모집시에 보험설계사가 보험 가입 전체 과정을 전화로 설명·녹취하는 대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요건¹³⁾을 갖춘 경우 표준 스크립트 낭독은 AI 음성봇을 활용할 수 있고, 서류작성 등 청약절차는 모바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비대면 보험모집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보험업감독규정」 시행 2022.2.18.).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업무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클라우드 이용 절차를 합리화하고, 이용자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제외한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 망분리 예외적용을 하는 방식의 규제 개선도 있었다(「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 2023.1.1.).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전문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신용정보법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의 업무도 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관리체계를 따로 마련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데이터 결합 절차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6.7.).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 서비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있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가계대출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대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에 보다 많은 가중치(115%)를 부여하였다. 또한 현장실사가 필요한 중소기업 대출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이 예외적으로 대면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은행업감독규정」 시행 2022.5.1.). 한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에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팩토링 운용규모와 매입 한도 등 세부내용을 정하여 중소기업팩토링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2.3.31.).

그 밖에도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규제완화 조치가 이루어졌다. 동일인의 은행 주식 보유상황에 대한 보고기간을 사유 발생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서 '10영업일 이내'로 연장하고,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이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2천달러 미만의 금전 제재는 금융위원회 보고 사항에서 제외하여 은행영업 규제를 완화하였다(「은행법 시행령」 시행 2022.5.9.). 보험업권에서는 건강유지·증진 등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의 선불전자지급업무 겸업을 허용하고, 보험업의 허가 통지기간에 보험업 허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사·검사 등의 진행기간이 산입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2.4.19.).

12) 종전에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한 경우에만 통신수단을 이용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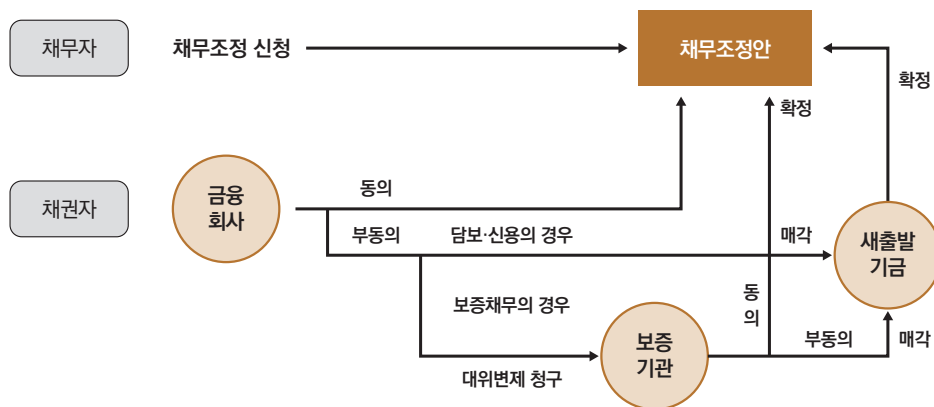
13) ①설명속도·음량 조절기능 제공, ②소비자가 AI 음성봇 사용중단 요청시 즉각 중단, ③소비자가 질문이나 추가설명 요청시 설계사가 실시간으로 직접 응대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IV.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측면에서도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먼저 주권상장법인이 핵심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별도로 상장하는 경우 기업가치 저하로 분할되는 회사의 주가가 하락하여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있었다. 물적분할을 위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소유주식을 분할 결의 전 주가로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청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였다. 이와 더불어 물적분할시 주요사항보고서에 자회사 상장 등 일정을 자세히 공시하도록 하고,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었는지를 감독당국이 심사하도록 하여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였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12.27).

국내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기업의 부실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되었다. 먼저 2022년 10월 4일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¹⁴⁾을 도입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가 있었다. 새출발기금의 운영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철저한 소득·재산 조사 및 부실채권 매입·채무조정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을 「대부업등 감독규정」 상 채권 매각대상 기관으로 규정하고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상 신용·정보 집중·공유시스템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또한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출발기금의 조기 보증채무 이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대부업등 감독규정」,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시행 2022.9.23,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2.10.4.).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절차



자료: 금융위원회

14)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잠재부실 대응을 위해 90일 이상 장기연체를 겪고 있는 부실채주 및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채주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거치기간 부여를 통한 만기 연장, 채무 장기·분할상환 전환, 이자율 인하 및 부실신용채무원금감면(0~80%) 등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다.

금융소비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하려는 노력도 이어졌다. 2019년 은행·보험회사·상호저축은행·여신사에 이어 상호금융업권(신협, 농·수협, 산림조합)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었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는 차주에게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전화, 서면 등으로 안내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신용협동조합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 2022.7.5.).¹⁵⁾ 또한 급격한 금리상승에 따라 중·저신용자가 종전 중금리 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수준을 적용받기 어려워져 고금리 대출로 구축되는 현상을 완화하고자 조달금리 변동에 따라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중금리 금리상한 기준을 합리화하였다(「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시행 2022.10.1.).

투자성 상품에 대한 과도한 불초청 방문판매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법령 개정도 있었다. 2021년 방문판매법 개정¹⁶⁾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성 금융상품에 대하여 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 없이도 방문·전화 등을 이용한 투자성 상품 권유가 널리 가능해졌으나, 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방문 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소비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상품 등과 같은 고위험 상품은 권유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환율변동 등

에 따라 손실가능성이 있는 외화보험의 경우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적용하여 소비자들이 환위험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도모하였다(「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9.27.).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 관련 제도를 보완하였다. 공매도 목적 대차 후 90일 경과시 감독당국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 보고 내용에 상세 대차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여 불법 공매도 점검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기관·외국인 대비 높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 부담을 완화하였다. 종전에는 개인 공매도시 빌린 주식의 140% 이상 담보가 필요하였으나 이를 120%로 인하여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제고하였다(「금융투자업규정」 시행 2022.11.9.).

V. 기타 정비사항

금융감독당국의 조직 및 예산 관련 규정정비가 이루어졌다.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국장 밑에 두는 자본시장정책관을 사무처에 두는 자본시장국으로 개편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를 위하여 자본시장조사단을 폐지하는 대신에 자본시장국에 2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 중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하였다(「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2.12.27.). 또한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독분담금 부담 경감을 위해 감독분담금 부과액 상한기준 및 환급기준을 개선하고, 금융영역간·

15) 또한 금융위원회는 '22.3월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업권별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 운용실적을 정기적으로 비교공시하도록 하여 '22.8월부터 은행연합회를 통해 매반기 운용실적(신청·수용건수, 이자감면액)이 공시되고 있다.

16) 2021년 방문판매법이 개정되면서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2.12.8.부터 시행되므로 이에 맞추어 금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영역내 분담금 배분 방식 및 광범위했던 분담금 면제 기준을 개편하여 감독분담금 제도를 합리화하였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1.1.).

증권선물위원회가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으로 등록한 자의 등록요건을 감리하여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하지 않은 회계법인은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시정권고를 미이행한 회계법인은 등록이 취소되는 등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감사 품질관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있었다. 이와 더불어 감사인 지정제도로 인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정감사 중 감사인 지정사유가 재차 발생하더라도 최대 3년 내에는 동일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감사보수 등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에는 보다 용이하게 감사인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부감사규정」 시행 2022.5.3.).

한편 IFRS17 도입으로 보험업법상 부채를 시가평가하도록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예금보험공사의 보험회사에 대한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은 예금보험금 산정기준이 되는 해약환급금이 원가방식으로 산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 원가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다(「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3.1.1.).

VI. 맺음말

2022년 중 금융관계법령 개정은 금융시장 불안 및 시중 유동성 사정 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운용 규제 완화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입법 추진이 중점적으로 추진된 가운데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규제 합리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도 함께 지속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와 중앙은행 등 정책당국의 시장안정화 대책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완화된 가운데 향후에도 시장 유동성 악화가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거시건전성 정책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조치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라 빅데이터·AI·블록체인·클라우드 등 신기술과 금융의 융합을 통한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마련 등의 노력도 계속되어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규제 완화에 따라 금융업권간 또는 금융·비금융 부문간 리스크 전이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세밀한 보완 장치 마련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면서 금융시스템의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